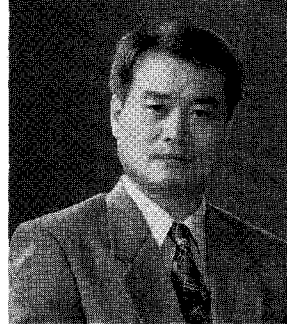


물류관리사 제도의 올바른 이해

건설교통부 물류정책과장
이영식



제도도입의 배경

이제까지 물류분야에서 인력수요는 단순 기능직 위주의 현장인력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향후 물류시설의 기계화·자동화, 물류정보 시스템의 구축, 물류관리기법의 고도화 등 물류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추세에 따라 물류인력에 대한 직종별 수요에 있어서 장래에 많은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기업경쟁력의 향상 요청에 따라 물류가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물류부문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각 기업의 물류전문인력, 특히 전문직·관리직의 보유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한 제1차 전국물류현황조사('97. 2)에 의하면, 향후 기업의 물류관리인력충원시 우선적으로 실시할 분야는 물류시스템기획, 물류센터운영, 수배송관리업무, 물류정보시스템개발, 물류기술개발 순으로 물류시스템에 대한 물류전문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매출액 대비 물류 인력소요를 보면 '95년에 물류기획관리 인력은 매출액 289.6억원당 1인, 현장관리인력은 120.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2년 이내에 물류기획관리인력은 매출액 203.5억원당 1인, 현장관리인력은 90.7억원당 1인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물류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인력양성을 위한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우리의 실정이었다.

앞서 언급한 조사에서는 현재 물류인력의 수급에 대하여 적당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46.2%,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39.6%로 나타나고 있으나, 물류관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회사자체내에서 실시하는 업체가 31.8%,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업체가 18.9%, 위탁교육만 실시하는 업체가 8.1%이며, 시행하고 있지 않은 업체도 38.3%로 나타나고 있어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이 매우 미흡한 실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물류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교육·훈련과정을 통하여 기업물류의 관리자 및 전문직 종사자들이 양성됨으로 인하여, 급격한 물류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물류관리의 고도화를 실현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기업의 일반적인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물류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원인중의 하나도 물류전문가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인식아래, 건설교통부에서 대학·전문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에서의 물류교육체계의 확립과 물류교육·연구의 활성화 분위기를 유도하여,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물류지식을 가진 고급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물류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물류관리사 의무고용제 없으며, 자격증 대여는 위법

물류관리사란 물류사업에 관한 전문적 계획·조사·연구·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물류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물류관리사제도의 도입은 대학등 교육기관 및 국민사이에서 물류교육의 필요성이나 물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물류과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기업에서 물류의 비중이 커지는 것과 함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많은 제도와 마찬가지로 동 제도 역시 조기에 정착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관리사제도는 물류관리사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기업의 의무고용제를 두고 있지 않다. 자격증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적(국가가 인정하든 또는 관련 전문단체에서 인정하든)인 증명으로서, 이것이 반드시 고용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물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의무고용제가 인정된다면 동 제도의 정착이 보다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리라는 추론에 근거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의무고용제가 검토되었으나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의무고용제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물류관리사를 활용에 대한 기업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업체의 47.5%가 활용계획이 있으며 활용형태에 대해서는 신규직원 채용시 우대보다는 기존의 직원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류관리사의 의무채용의 법제화에 대하여 54.3%에 해당하는 업체가 반대의견을 표시함으로써 기업이 물류관리사의 채용의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대여행위는 위법행위이며, 자격증의 본질이 자연인의 신분에 부합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대여행위란 그 자체가 논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더불어 동제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무고용제가 아니므로 자격증을 기업이 임차할 타당한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자격시험 금년 8월이후 실시예정

건설교통부가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주

관하고,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한국물류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시험과목은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등 4개과목이다.

또한 물류관리사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응시자격, 시험실시방법, 선발예정인원, 시험출제방법 및 방향, 출제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후 시험계획은 6월중에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할 예정이다. 6월중에 응시원서를 교부 및 접수하여 응시인원을 고려 시험장소를 선정하게 된다. 그 후 제반 절차를 거쳐 시험은 '97. 8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은 물류전문가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의 최소한의 지식을 검증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한다고 하여 곧바로 물류부문의 고급전문가가 되었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자격증 취득자들에게는 향후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연구노력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자격증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자격증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끝으로, 그 간 일부 수험교재 판매사업자들의 수험서판매를 목적으로 일간신문 등을 통해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행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듯이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 동 제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여 잘못된 정보를 오신하여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기업인 여러분께서는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척박한 물류현실속에서도 물류합리화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